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이지연 의원 외 12명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. .

발 의 자 : 이지연·김낙관·김민성·김영태
김재우·김정도·박세채·신용하
이상호·장미경·정지원·추은희
허민근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 및 지원 범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
-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·증설 투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구미시 인구 증가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및 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임대료 지원 기간 명시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예외사항 규정
(안 제26조)
- 나.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이 신·증설 투자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
(안 제26조의2)
- 다.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삭제
- 라.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신설 (안 제29조의2)

3. 조 례 안 : 불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,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불임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불임)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임대료”를 “5년간 임대료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50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부담금 지원) ① 시장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장(제27조 및 제28조)을 삭제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

와 고용창출을 통해 구미시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의2, 제29조에 따른 지원 외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 관내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며, 기업당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 (제29조의2제2항 관련)

관내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	추가 지원비율
10%이상 ~ 2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1%
20%이상 ~ 3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2%
30%이상 ~ 4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3%
40%이상 ~ 5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4%
50%이상 ~	설비투자금액의 5%
- 유의사항(필수) - 1. 추가 지원 신청은 조례 지원 신청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부터 투자금 및 신규 상시고용 인원 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종결이 최종 승인 된 후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다. 2. 관내 전입근로자 증가 비율은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 고용되어있는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, 투자가 완료된 날 또는 사업종결이 최종 승인된 날의 관내 전입 근로자의 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. (단,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 투자기업의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가 없을 경우 1명을 기준으로 증가 비율을 산정한다.) 3.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 산정 시, 전입 근로자는 신청일 전 최소 1년 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. 4. 추가 지원 인센티브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산업단지 임대료 지원)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 임대용지에 최초 입주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26조(산업단지 임대료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간 임대료-----.</u> ② 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50년간 지원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부담금 지원) ① 시장은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전문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회에 한하여 50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

<삭 제>

제27조(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)

<삭 제>

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
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
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
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
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가 부담
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의
협의에 따른다.

제28조(기금의 사용) 시장은 기금

<삭 제>

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
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
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

2.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

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
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
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 가액
과의 차액

3.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보조
금의 지급

4. 시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
경비

5.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<u>사업</u> 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2(인구증가 기여에 따른</u> <u>추가 지원) ① 시장은 지역경제</u> <u>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해 구미</u> <u>시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에</u> <u>대해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의</u> <u>2, 제29조에 따른 지원 외 추가</u> <u>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은</u> <u>관내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에</u> <u>따라 별표와 같이 정하며, 기업</u> <u>당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</u> <u>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</u> <u>다.</u>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11조의2(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·지원 등)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기업, 근로자,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, 투자계획,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(이하 “상생형지역일자리”라 한다)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 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
2.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
3.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(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을 말한다)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출자·출연을 받은 기관·법인·단체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·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1항·제33조(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·제23조·제32조·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·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·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

하여야 한다.

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·선정·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
제2조(소재·부품 및 장비의 범위)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(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)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
2.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·부품·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
3.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
4.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

■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[별표 1]

소재·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(제2조 관련)

한국표준산업분류	업종명
13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
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24	1차 금속 제조업
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28	전기장비 제조업
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58	출판업

비고: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
2.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·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47조(자금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제2항(산업단지 임대료 지원)
: 임대료 지원(임대료의 70% 구미시 부담) *30% 경북도부담
※ 제26조 ② 시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기간을 초과하여 최대 50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지원기간 : 50년/ 2022.1.4.~2072.1.3. *임대차계약체결('22.1.4.)
- 조성단가 : 3,615원/m²(1,000천원/평), 임대료율 : 1% 가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※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조

4. 재원조달 방안

- 상생형 일자리 투자협약에 따른 도비 및 시비 확보
: 기업의 선납 임대료분 협약 비율대로 지원 (경상북도 3, 구미시 7)

5. 부대의견

- 매년 6월경 조성단가와 임대료율(변동)이 재산정 됨에 따라, 정확한 금액의 추계가 어려우며
- 이에 따라, 실제 납부할 임대료는 사업계획서 상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6. 작성자 :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조수정(☎054-480-260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임대기간 : 50년/ 2022. 1. 4. ~ 2072. 1. 3. *임대차계약체결('22. 1. 4)

2. 임대료(50년) : 약 110억원 (도비 30%, 시비 70%)

- 사업계획서 상 조성원가 1,000천원/평, 임대료율 1% 가정
- 요율 : 변동금리(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예금이자 평균값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년	50년	비 고
면 적	66,116m ² (20,000평)		
조 성 원 가	20,000,000		
임 대 료	200,000	10,000,000	
부가가치세	20,000	1,000,000	
임대료 계	220,000	11,000,000	

※ 임대료율(변동금리)이 금리에 따라 변동되어 예상금액과 실제금액 편차 발생

※ 지원방법 : (LG BCM) 임대료 매년 선납, (지방자치단체) 임대료 매년 지원

□ 2022년도 납부 임대료 : 260,749,360원 * 조성 단가 3,615원/m², 임대료율 1.2%

○ 22년 상반기 임대료 : 128,213,770원(22.01.04.납부완료)

○ 22년 하반기 임대료 : 132,535,590원(22.06.30.납부완료)

□ 2023년도 납부 임대료(상반기) : 130,374,670원 * 조성 단가 3,615원/m²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연중계속
- 대기업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경감 지원으로 추계 불가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해당없음

4. 재원조달 방안

- 해당없음

5. 부대의견

- 기업의 투자계획의 경우 투자협약 체결 전까지 회사에서도 대외비로 편성 처리하여 정확한 비용 추계 등이 어려움
- 기업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등으로 기업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됨

6. 작성자 : 기업투자과 투자유치1팀 이유정((☎054-480-6123))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9조의2(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연중계속
- 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 예산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300	900	1,600	1,100	300	3,2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비	300	900	1,600	1,100	300	3,200
합계	300	900	1,600	1,100	300	3,2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최근 5개년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액, 신규 고용인원을 모두 달성했을 때 최대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,
- 투자기업이 증가하거나 기 투자기업이 투자를 미완료 또는 인구 증가비율의 편차에 따라 비용이 증감할 수 있음

6. 작성자 : 기업투자과 투자유치1팀 이유정((☎054-480-6123)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'19~'23년까지 32개사 투자양해각서 체결(총 투자액 87,177억원)
- 인구증가에 따른 추가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
- 투자기업이 인구증가 추가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,
 - 총 32개사 × 1억원 = 32억원 예상 (단, 기업이 투자를 계획대로 완료할 시 지급)

(단위 : 억원)

연도	MOU 맺은기업	투자액	실 지원예정액	고용(명)
총 계	32개사	87,177	32	6,794
2023년	3개사	13,749	3	252
2022년	11개사	31,256	11	2,407
2021년	16개사	17,172	16	1,622
2020년	9개사	19,828	9	1,358
2019년	3개사	5,172	3	1,155

※ 참고

[별표3]

인구증가 기여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 (제29조의2제2항 관련)

관내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	추가 지원비율
10%이상 ~ 2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1%
20%이상 ~ 3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2%
30%이상 ~ 4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3%
40%이상 ~ 50%미만	설비투자금액의 4%
50%이상~	설비투자금액의 5%
- 유의사항(필수) -	
1. 추가 지원 신청은 조례 지원 신청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부터 투자금 및 신규 상시고용 인원 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,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업의 경우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종결이 최종 승인 된 후 3개월 내 신청할 수 있다.	
2. 관내 전입근로자 증가 비율은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 고용되어있는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, 투자가 완료된 날 또는 사업종결이 최종 승인된 날의 관내 전입 근로자의 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. (단, 투자유치협약 체결 시 투자기업의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가 없을 경우 1명을 기준으로 증가 비율을 산정한다.)	
3. 전입 근로자 증가 비율 산정 시, 전입 근로자는 신청일 전 최소 1년 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.	
4. 추가 지원 인센티브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	